

이화어린이연구원 규정

2006. 10. 20. 제정

2019. 1. 10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린이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연구원은 영유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교육과 생활지도를 실시하며 이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(개정 2012.2.29., 2017.11.16.)

1.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공개강좌 운영 (개정 2017.11.16.)
2. 영유아 발달과 교육에 관한 연구
3. 영유아 교육에 관한 학술 활동 (개정 2017.11.16.)
4. 부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연구 (개정 2017.11.16.)
5. 교육 및 보육 전문가 훈련
6. 삭제 (2019.1.10.)
7. 기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(개정 2012.2.29., 2017.11.16.)

제3조(원장)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4조(조직) ① 연구원에 이화영유아교육센터 및 이화영유아연구센터를 둔다. (개정 2019.1.10.)

② 이화영유아교육센터는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이화영유아연구센터는 영유아 및 부모 교육 연구, 출판 등 학술 활동, 전문가 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7.11.16.)

④ 삭제 (2019.1.10.)

⑤ 이화영유아교육센터 및 이화영유아연구센터는 연구 결과 확인 및 보급을 위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. (신설 2017.11.16.)

제5조(센터장) 이화영유아교육센터 및 이화영유아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. (개정 2017.11.16.)

[제목개정 2017.11.16.]

제6조(연구위원) ① 연구원에는 연구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

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7.11.16.)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객원연구위원의 경우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
③ 연구보조원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7.11.16.)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지원하며, 연구원 산하 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. (개정 2017.11.16.)

제8조(행정인력) ① 연구원에 두는 행정인력은 원장이 임명한다.
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원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 (개정 2010.7.7)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어린이연구원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기획처장, 총무처장, 관리처장, 연구처장, 원장, 대학원 아동학과장, 사범대학 유아교육과장, 부속유치원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 (개정 2012.2.29., 2018.6.20., 2018.11.21.)

③ 위원회 구성은 기획처 기획팀에서 품의한다. (신설 2012.2.29.) (개정 2017.11.16.)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7.11.16.)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원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
5. 삭제 (2019.1.10.)
6.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(개정 2012.2.29)

⑥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2.2.29)

제10조(사업 계획 및 보고)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제11조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 연구원의 경비는 연구원 자체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원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7.11.16., 2018.6. 20.)

제12조(운영세칙)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6. 10. 20 제정)

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11. 7 개정)

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2. 29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11. 16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11. 21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1. 10. 개정)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